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방문요양)

경주안심심리버전보호센터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 2)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 부당요구를 하지 말 것
-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4)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 6)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사. 기관의 의무

-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2)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

보

- 3) 급여 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4)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보건소 치매 돌봄 서비스 복지관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교통약자 차량 이용 서비스 외)
-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아. 계약의 해지 요건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마)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자. 계약의 해지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 방문요양 비급여는 월 한도액에서 초과로 이용 시 한도액 초과 금액을 내는 경우

나. 급여비용 변경절차

- 1)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한다.
-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내용

- 1) 신체활동지원
- 2) 인지활동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3) 인지관리지원
- 4) 정서지원
-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6) 기타 방문요양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나.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

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긴다.

나.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별표 1] 월 이용료(2026년 기준)

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원)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라.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 변화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머리 감기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오그라들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